

#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6,092,043	5,582,761
일반회계	181,178,068	5,435,342
특별회계	4,913,975	147,419
기타특별회계	4,913,975	147,41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29,671	12,89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08,050	9,242
주차장 특별회계	3,041,366	91,241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08,934	12,268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717,000	21,510
기반시설 특별회계	8,954	26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41,30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